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입주자모집공고



※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방지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내방시 유의사항**
  1. COVID-19 감염예방으로 견본주택을 방문이 불가하신 경우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hillstate.co.kr/s/#skyum>) 및 상담전화(☎1577-3565)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577-3565)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의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견본주택 내방시 당첨자 1인만 내방 가능(동행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5.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2. 0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01.**)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에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skyu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 「주택법」 제64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10%) 완납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12월 06일(화)	12월 07일(수)	12월 08일(목)	12월 14일(수)	12월 19일(월) ~ 12월 24일(토)	12월 26일(월) ~ 12월 28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건본주택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계약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주택과 - 제49807호(2022.12.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6개동 총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45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8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0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7세대)

■ 주차대수 : 총 1,473대(아파트 1,337대, 근린생활시설 31대, 오피스텔 105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 영 주 택	2022000842	1	59.9269A	59A	59.9269	27.2509	87.1778	39.9175	127.0953	9.4983	36	3	-	7	6	1	17	19	-
		2	59.9547B	59B	59.9547	27.4566	87.4113	39.9360	127.3473	9.5027	36	3	-	7	6	1	17	19	-
		3	59.9676C	59C	59.9676	29.1110	89.0786	39.9446	129.0232	9.5047	36	3	-	7	6	1	17	19	-
		4	59.9947D	59D	59.9947	26.8598	86.8545	39.9626	126.8172	9.5090	10	1	-	2	2	-	5	5	1
		5	59.9705E	59E	59.9705	26.6665	86.6370	39.9465	126.5836	9.5052	10	1	-	2	2	-	5	5	1
		6	84.9521A	84A	84.9521	36.3987	121.3508	56.5868	177.9376	13.4647	138	14	14	27	14	4	73	65	3
		7	84.9129B	84B	84.9129	37.5748	122.4877	56.5607	179.0485	13.4585	138	14	14	27	14	4	73	65	3
		8	84.9517C	84C	84.9517	37.7844	122.7361	56.5866	179.3226	13.4646	206	21	21	41	21	6	110	96	3
		9	84.9985D	84D	84.9985	37.0166	122.0151	56.6177	178.6328	13.4720	81	8	8	16	8	2	42	39	1
		10	84.9611E	84E	84.9611	37.1432	122.1043	56.5928	178.6971	13.4661	68	7	7	13	7	2	36	32	-
		11	84.9922F	84F	84.9922	37.6978	122.6900	56.6135	179.3035	13.4710	10	1	1	2	1	-	5	5	1
		12	84.9472G	84G	84.9472	38.2988	123.2460	56.5836	179.8295	13.4639	47	4	4	9	4	1	22	25	1
		13	114.9813A	114A	114.9813	48.5180	163.4993	76.5894	240.0887	18.2242	105	-	10	-	-	3	13	92	-
		14	114.9604B	114B	114.9604	48.7391	163.6995	76.5755	240.2750	18.2209	78	-	8	-	-	2	10	68	1
합계											999	80	87	160	91	27	445	554	15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주택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59.9269A	59.9547B	59.9676C	59.9947D	59.9705E	84.9521A	84.9129B	84.9517C	84.9985D	84.9611E	84.9922F	84.9472G	114.9813A	114.9604B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14A	11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총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59A	104동(2호)	36	12~14층	3	82,137,015	262,252,985		344,390,000	10,000,000	24,439,000	34,439,000	34,439,000	34,439,000	34,439,000	34,439,000	34,439,000	34,439,000	103,317,000	
			15~19층	5	82,549,620	263,570,380		346,120,000	10,000,000	2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34,612,000	103,836,000
			20~24층	4	83,374,830	266,205,170		349,580,000	10,000,000	2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34,958,000	104,874,000
			25~29층	5	84,200,040	268,839,960		353,040,000	10,000,000	2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35,304,000	105,912,000
			30~34층	5	85,852,845	274,117,155		359,970,000	10,000,000	2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35,997,000	107,991,000
			35~39층	5	86,265,450	275,434,550		361,700,000	10,000,000	2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108,510,000
			40~44층	5	86,678,055	276,751,945		363,430,000	10,000,000	2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36,343,000	109,029,000
59B	104동(3호)	36	12~14층	3	74,414,385	237,595,615		312,010,000	10,000,000	21,201,000	31,201,000	31,201,000	31,201,000	31,201,000	31,201,000	31,201,000	31,201,000	93,603,000	
			15~19층	5	74,788,830	238,791,170		313,580,000	10,000,000	2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94,074,000
			20~24층	4	75,535,335	241,174,665		316,710,000	10,000,000	2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31,671,000	95,013,000
			25~29층	5	76,284,225	243,565,775		319,850,000	10,000,000	2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31,985,000	95,955,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30~34층	5	77,779,620	248,340,380		326,120,000	10,000,000	22,612,000	32,612,000	32,612,000	32,612,000	32,612,000	32,612,000	32,612,000	32,612,000	97,836,000
			35~39층	5	78,154,065	249,535,935		327,690,000	10,000,000	22,769,000	32,769,000	32,769,000	32,769,000	32,769,000	32,769,000	32,769,000	32,769,000	98,307,000
			40~44층	5	78,528,510	250,731,490		329,260,000	10,000,000	22,926,000	32,926,000	32,926,000	32,926,000	32,926,000	32,926,000	32,926,000	32,926,000	98,778,000
			45~48층	4	78,900,570	251,919,430		330,820,000	10,000,000	23,082,000	33,082,000	33,082,000	33,082,000	33,082,000	33,082,000	33,082,000	33,082,000	99,246,000
59C	104동(4호)	36	12~14층	3	75,833,460	242,126,540		317,960,000	10,000,000	21,796,000	31,796,000	31,796,000	31,796,000	31,796,000	31,796,000	31,796,000	31,796,000	95,388,000
			15~19층	5	76,215,060	243,344,940		319,560,000	10,000,000	21,956,000	31,956,000	31,956,000	31,956,000	31,956,000	31,956,000	31,956,000	31,956,000	95,868,000
			20~24층	4	76,975,875	245,774,125		322,750,000	10,000,000	22,275,000	32,275,000	32,275,000	32,275,000	32,275,000	32,275,000	32,275,000	32,275,000	96,825,000
			25~29층	5	77,739,075	248,210,925		325,950,000	10,000,000	22,595,000	32,595,000	32,595,000	32,595,000	32,595,000	32,595,000	32,595,000	32,595,000	97,785,000
			30~34층	5	79,263,090	253,076,910		332,340,000	10,000,000	23,234,000	33,234,000	33,234,000	33,234,000	33,234,000	33,234,000	33,234,000	33,234,000	99,702,000
			35~39층	5	79,644,690	254,295,310		333,940,000	10,000,000	23,394,000	33,394,000	33,394,000	33,394,000	33,394,000	33,394,000	33,394,000	33,394,000	100,182,000
			40~44층	5	80,026,290	255,513,710		335,540,000	10,000,000	23,554,000	33,554,000	33,554,000	33,554,000	33,554,000	33,554,000	33,554,000	33,554,000	100,662,000
			45~48층	4	80,405,505	256,724,495		337,130,000	10,000,000	23,713,000	33,713,000	33,713,000	33,713,000	33,713,000	33,713,000	33,713,000	33,713,000	101,139,000
59D	104동(3호)	10	2층	1	70,824,960	226,135,040		296,960,000	10,000,000	19,696,000	29,696,000	29,696,000	29,696,000	29,696,000	29,696,000	29,696,000	29,696,000	89,088,000
			3~4층	2	71,552,385	228,457,615		300,010,000	10,000,000	2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90,003,000
			5~7층	3	71,914,905	229,615,095		301,530,000	10,000,000	20,153,000	30,153,000	30,153,000	30,153,000	30,153,000	30,153,000	30,153,000	30,153,000	90,459,000
			8~9층	2	73,567,710	234,892,290		308,460,000	10,000,000	20,846,000	30,846,000	30,846,000	30,846,000	30,846,000	30,846,000	30,846,000	30,846,000	92,538,000
			10~11층	2	73,939,770	236,080,230		310,020,000	10,000,000	21,002,000	31,002,000	31,002,000	31,002,000	31,002,000	31,002,000	31,002,000	31,002,000	93,006,000
59E	104동(4호)	10	2층	1	71,736,030	229,043,970		300,780,000	10,000,000	20,078,000	30,078,000	30,078,000	30,078,000	30,078,000	30,078,000	30,078,000	90,234,000	
			3~4층	2	72,470,610	231,389,390		303,860,000	10,000,000	20,386,000	30,386,000	30,386,000	30,386,000	30,386,000	30,386,000	30,386,000	91,158,000	
			5~7층	3	72,837,900	232,562,100		305,400,000	10,000,000	2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91,620,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8~9층	2	74,512,170	237,907,830		312,420,000	10,000,000	21,242,000	31,242,000	31,242,000	31,242,000	31,242,000	31,242,000	31,242,000	93,726,000	
			10~11층	2	74,889,000	239,111,000		314,000,0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84A	101동(4호), 102동(4호), 103동(4호)	138	2층	3	114,372,675	365,177,325		479,550,000	10,000,000	37,955,000	47,955,000	47,955,000	47,955,000	47,955,000	47,955,000	47,955,000	143,865,000	
			3~4층	6	115,546,095	368,923,905		484,470,000	10,000,000	38,447,000	48,447,000	48,447,000	48,447,000	48,447,000	48,447,000	48,447,000	145,341,000	
			5~9층	15	116,130,420	370,789,580		486,920,000	10,000,000	38,692,000	48,692,000	48,692,000	48,692,000	48,692,000	48,692,000	48,692,000	146,076,000	
			10~14층	15	116,717,130	372,662,870		489,380,000	10,000,000	38,938,000	48,938,000	48,938,000	48,938,000	48,938,000	48,938,000	48,938,000	146,814,000	
			15~19층	15	117,303,840	374,536,160		491,840,000	10,000,000	39,184,000	49,184,000	49,184,000	49,184,000	49,184,000	49,184,000	49,184,000	147,552,000	
			20~24층	12	118,477,260	378,282,740		496,760,000	10,000,000	3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49,676,000	149,028,000	
			25~29층	15	119,650,680	382,029,320		501,680,000	10,000,000	40,168,000	50,168,000	50,168,000	50,168,000	50,168,000	50,168,000	50,168,000	150,504,000	
			30~34층	15	121,997,520	389,522,480		511,520,000	10,000,000	41,152,000	51,152,000	51,152,000	51,152,000	51,152,000	51,152,000	51,152,000	153,456,000	
			35~39층	15	122,584,230	391,395,770		513,980,000	10,000,000	41,398,000	51,398,000	51,398,000	51,398,000	51,398,000	51,398,000	51,398,000	154,194,000	
			40~44층	15	123,170,940	393,269,060		516,440,000	10,000,000	41,644,000	51,644,000	51,644,000	51,644,000	51,644,000	51,644,000	51,644,000	154,932,000	
			45~49층	12	123,755,265	395,134,735		518,890,000	10,000,000	41,889,000	51,889,000	51,889,000	51,889,000	51,889,000	51,889,000	155,667,000		
84B	101동(3호), 102동(3호), 103동(3호)	138	2층	3	115,443,540	368,596,460		484,040,000	10,000,000	38,404,000	48,404,000	48,404,000	48,404,000	48,404,000	48,404,000	48,404,000	145,212,000	
			3~4층	6	116,626,500	372,373,500		489,000,000	10,000,000	3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5~9층	15	117,220,365	374,269,635		491,490,000	10,000,000	3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147,447,000	
			10~14층	15	117,811,845	376,158,155		493,970,000	10,000,000	39,397,000	49,397,000	49,397,000	49,397,000	49,397,000	49,397,000	49,397,000	148,191,000	
			15~19층	15	118,403,325	378,046,675		496,450,000	10,000,000	39,645,000	49,645,000	49,645,000	49,645,000	49,645,000	49,645,000	49,645,000	148,935,000	
			20~24층	12	119,588,670	381,831,330		501,420,000	10,000,000	40,142,000	50,142,000	50,142,000	50,142,000	50,142,000	50,142,000	50,142,000	150,426,000	
			25~29층	15	120,771,630	385,608,370		506,380,000	10,000,000	40,638,000	50,638,000	50,638,000	50,638,000	50,638,000	50,638,000	50,638,000	50,638,000	151,914,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84C			30~34층	15	123,139,935	393,170,065		516,310,000	10,000,000	41,631,000	51,631,000	51,631,000	51,631,000	51,631,000	51,631,000	51,631,000	51,631,000	154,893,000	
			35~39층	15	123,731,415	395,058,585		518,790,000	10,000,000	4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155,637,000
			40~44층	15	124,322,895	396,947,105		521,270,000	10,000,000	4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52,127,000	156,381,000
			45~49층	12	124,916,760	398,843,240		523,760,000	10,000,000	4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52,376,000	157,128,000
	101동(2호), 102동(2호)	94	2층	2	96,652,125	308,597,875		405,250,000	10,000,000	3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40,525,000	121,575,000
			3~4층	4	97,641,900	311,758,100		409,400,000	10,000,000	3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122,820,000
			5~7층	6	98,137,980	313,342,020		411,480,000	10,000,000	3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41,148,000	123,444,000
			8~9층	4	100,394,190	320,545,810		420,940,000	10,000,000	3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42,094,000	126,282,000
			10~14층	10	100,902,195	322,167,805		423,070,000	10,000,000	3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42,307,000	126,921,000
			15~19층	10	101,407,815	323,782,185		425,190,000	10,000,000	3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42,519,000	127,557,000
			20~24층	8	102,423,825	327,026,175		429,450,000	10,000,000	3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42,945,000	128,835,000
			25~29층	10	103,437,450	330,262,550		433,700,000	10,000,000	3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130,110,000
			30~34층	10	105,464,700	336,735,300		442,200,000	10,000,000	3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132,660,000
			35~39층	10	105,972,705	338,357,295		444,330,000	10,000,000	3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44,433,000	133,299,000
			40~44층	10	106,478,325	339,971,675		446,450,000	10,000,000	3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44,645,000	133,935,000
	45~49층	10	106,986,330	341,593,670		448,580,000	10,000,000	3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44,858,000	134,574,000		
	103동(2호)	44	2층	1	111,093,300	354,706,700		465,800,000	10,000,000	3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46,580,000	139,740,000
			3~4층	2	112,233,330	358,346,670		470,580,000	10,000,000	3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47,058,000	141,174,000
			5~9층	5	112,803,345	360,166,655		472,970,000	10,000,000	3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47,297,000	141,891,000
10~14층			5	113,373,360	361,986,640		475,360,000	10,000,000	3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47,536,000	142,608,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15~19층	5	113,943,375	363,806,625		477,750,000	10,000,000	37,775,000	47,775,000	47,775,000	47,775,000	47,775,000	47,775,000	47,775,000	47,775,000	143,325,000	
			20~24층	4	115,081,020	367,438,980		482,520,000	10,000,000	3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48,252,000	144,756,000
			25~29층	5	116,221,050	371,078,950		487,300,000	10,000,000	3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48,730,000	146,190,000
			30~34층	5	118,501,110	378,358,890		496,860,000	10,000,000	3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49,686,000	149,058,000
			35~39층	5	119,068,740	380,171,260		499,240,000	10,000,000	3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149,772,000
			40~44층	5	119,638,755	381,991,245		501,630,000	10,000,000	4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50,163,000	150,489,000
			45~46층	2	120,208,770	383,811,230		504,020,000	10,000,000	4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50,402,000	151,206,000
105동(3호)	34	12~14층	3	102,438,135	327,071,865		429,510,000	10,000,000	3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42,951,000	128,853,000	
		15~19층	5	102,953,295	328,716,705		431,670,000	10,000,000	3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43,167,000	129,501,000	
		20~24층	4	103,983,615	332,006,385		435,990,000	10,000,000	3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43,599,000	130,797,000	
		25~29층	5	105,011,550	335,288,450		440,300,000	10,000,000	3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30~34층	5	107,072,190	341,867,810		448,940,000	10,000,000	3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134,682,000	
		35~39층	5	107,584,965	343,505,035		451,090,000	10,000,000	3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45,109,000	135,327,000	
		40~44층	5	108,100,125	345,149,875		453,250,000	10,000,000	3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45,325,000	135,975,000	
			45~46층	2	108,615,285	346,794,715		455,410,000	10,000,000	35,541,000	45,541,000	45,541,000	45,541,000	45,541,000	45,541,000	45,541,000	45,541,000	136,623,000	
106동(3호)	34	12~14층	3	115,100,100	367,499,900		482,600,000	10,000,000	3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144,780,000	
		15~19층	5	115,677,270	369,342,730		485,020,000	10,000,000	3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48,502,000	145,506,000	
		20~24층	4	116,833,995	373,036,005		489,870,000	10,000,000	3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48,987,000	146,961,000	
		25~29층	5	117,990,720	376,729,280		494,720,000	10,000,000	3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49,472,000	148,416,000	
		30~34층	5	120,304,170	384,115,830		504,420,000	10,000,000	4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50,442,000	151,326,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84D			35~39층	5	120,883,725	385,966,275		506,850,000	10,000,000	40,685,000	50,685,000	50,685,000	50,685,000	50,685,000	50,685,000	50,685,000	50,685,000	152,055,000		
			40~44층	5	121,460,895	387,809,105		509,270,000	10,000,000	40,927,000	50,927,000	50,927,000	50,927,000	50,927,000	50,927,000	50,927,000	50,927,000	152,781,000		
			45~46층	2	122,040,450	389,659,550		511,700,000	10,000,000	4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153,510,000		
	102동(1호)	47	2층	1	98,548,200	314,651,800		413,200,000	10,000,000	3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123,960,000		
			3~4층	2	99,557,055	317,872,945		417,430,000	10,000,000	31,743,000	41,743,000	41,743,000	41,743,000	41,743,000	41,743,000	41,743,000	41,743,000	125,229,000		
			5~7층	3	100,062,675	319,487,325		419,550,000	10,000,000	31,955,000	41,955,000	41,955,000	41,955,000	41,955,000	41,955,000	41,955,000	41,955,000	125,865,000		
			8~9층	2	102,364,200	326,835,800		429,200,000	10,000,000	32,920,000	42,920,000	42,920,000	42,920,000	42,920,000	42,920,000	42,920,000	42,920,000	128,760,000		
			10~14층	5	102,881,745	328,488,255		431,370,000	10,000,000	33,137,000	43,137,000	43,137,000	43,137,000	43,137,000	43,137,000	43,137,000	43,137,000	129,411,000		
			15~19층	5	103,396,905	330,133,095		433,530,000	10,000,000	3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130,059,000		
			20~24층	4	104,431,995	333,438,005		437,870,000	10,000,000	33,787,000	43,787,000	43,787,000	43,787,000	43,787,000	43,787,000	43,787,000	43,787,000	131,361,000		
			25~29층	5	105,464,700	336,735,300		442,200,000	10,000,000	3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44,220,000	132,660,000		
			30~34층	5	107,534,880	343,345,120		450,880,000	10,000,000	35,088,000	45,088,000	45,088,000	45,088,000	45,088,000	45,088,000	45,088,000	45,088,000	135,264,000		
			35~39층	5	108,050,040	344,989,960		453,040,000	10,000,000	3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45,304,000	135,912,000		
			40~44층	5	108,567,585	346,642,415		455,210,000	10,000,000	35,521,000	45,521,000	45,521,000	45,521,000	45,521,000	45,521,000	45,521,000	45,521,000	136,563,000		
			45~49층	5	109,085,130	348,294,870		457,380,000	10,000,000	35,738,000	45,738,000	45,738,000	45,738,000	45,738,000	45,738,000	45,738,000	45,738,000	137,214,000		
			105동(4호)	34	12~14층	3	104,448,690	333,491,310		437,940,000	10,000,000	33,794,000	43,794,000	43,794,000	43,794,000	43,794,000	43,794,000	43,794,000	43,794,000	131,382,000
					15~19층	5	104,973,390	335,166,610		440,140,000	10,000,000	34,014,000	44,014,000	44,014,000	44,014,000	44,014,000	44,014,000	44,014,000	44,014,000	132,042,000
					20~24층	4	106,022,790	338,517,210		444,540,000	10,000,000	34,454,000	44,454,000	44,454,000	44,454,000	44,454,000	44,454,000	44,454,000	44,454,000	133,362,000
					25~29층	5	107,072,190	341,867,810		448,940,000	10,000,000	3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134,682,000
30~34층	5	109,170,990			348,569,010		457,740,000	10,000,000	35,774,000	45,774,000	45,774,000	45,774,000	45,774,000	45,774,000	45,774,000	45,774,000	137,322,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35~39층	5	109,695,690	350,244,310		459,940,000	10,000,000	35,994,000	45,994,000	45,994,000	45,994,000	45,994,000	45,994,000	45,994,000	45,994,000	137,982,000
			40~44층	5	110,220,390	351,919,610		462,140,000	10,000,000	36,214,000	46,214,000	46,214,000	46,214,000	46,214,000	46,214,000	46,214,000	46,214,000	138,642,000
			45~46층	2	110,745,090	353,594,910		464,340,000	10,000,000	36,434,000	46,434,000	46,434,000	46,434,000	46,434,000	46,434,000	46,434,000	46,434,000	139,302,000
84E	105동(2호), 106동(2호)	68	12~14층	6	112,789,035	360,120,965		472,910,000	10,000,000	37,291,000	47,291,000	47,291,000	47,291,000	47,291,000	47,291,000	47,291,000	47,291,000	141,873,000
			15~19층	10	113,356,665	361,933,335		475,290,000	10,000,000	37,529,000	47,529,000	47,529,000	47,529,000	47,529,000	47,529,000	47,529,000	47,529,000	142,587,000
			20~24층	8	114,489,540	365,550,460		480,040,000	10,000,000	38,004,000	48,004,000	48,004,000	48,004,000	48,004,000	48,004,000	48,004,000	48,004,000	144,012,000
			25~29층	10	115,622,415	369,167,585		484,790,000	10,000,000	38,479,000	48,479,000	48,479,000	48,479,000	48,479,000	48,479,000	48,479,000	48,479,000	145,437,000
			30~34층	10	117,890,550	376,409,450		494,300,000	10,000,000	3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148,290,000
			35~39층	10	118,455,795	378,214,205		496,670,000	10,000,000	39,667,000	49,667,000	49,667,000	49,667,000	49,667,000	49,667,000	49,667,000	49,667,000	149,001,000
			40~44층	10	119,023,425	380,026,575		499,050,000	10,000,000	39,905,000	49,905,000	49,905,000	49,905,000	49,905,000	49,905,000	49,905,000	49,905,000	149,715,000
			45~46층	4	119,591,055	381,838,945		501,430,000	10,000,000	40,143,000	50,143,000	50,143,000	50,143,000	50,143,000	50,143,000	50,143,000	150,429,000	
84F	105동(4호)	10	2층	1	98,085,510	313,174,490		411,260,000	10,000,000	31,126,000	41,126,000	41,126,000	41,126,000	41,126,000	41,126,000	41,126,000	41,126,000	123,378,000
			3~4층	2	99,091,980	316,388,020		415,480,000	10,000,000	31,548,000	41,548,000	41,548,000	41,548,000	41,548,000	41,548,000	41,548,000	41,548,000	124,644,000
			5~7층	3	99,595,215	317,994,785		417,590,000	10,000,000	31,759,000	41,759,000	41,759,000	41,759,000	41,759,000	41,759,000	41,759,000	41,759,000	125,277,000
			8~9층	2	101,884,815	325,305,185		427,190,000	10,000,000	32,719,000	42,719,000	42,719,000	42,719,000	42,719,000	42,719,000	42,719,000	42,719,000	128,157,000
			10~11층	2	102,399,975	326,950,025		429,350,000	10,000,000	32,935,000	42,935,000	42,935,000	42,935,000	42,935,000	42,935,000	42,935,000	42,935,000	128,805,000
84G	101동(1호)	47	2층	1	99,542,745	317,827,255		417,370,000	10,000,000	31,737,000	41,737,000	41,737,000	41,737,000	41,737,000	41,737,000	41,737,000	41,737,000	125,211,000
			3~4층	2	100,563,525	321,086,475		421,650,000	10,000,000	32,165,000	42,165,000	42,165,000	42,165,000	42,165,000	42,165,000	42,165,000	42,165,000	126,495,000
			5~7층	3	101,073,915	322,716,085		423,790,000	10,000,000	3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127,137,000
			8~9층	2	103,396,905	330,133,095		433,530,000	10,000,000	3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43,353,000	130,059,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총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10~14층	5	103,919,220	331,800,780		435,720,000	10,000,000	33,572,000	43,572,000	43,572,000	43,572,000	43,572,000	43,572,000	43,572,000	43,572,000	130,716,000	
			15~19층	5	104,441,535	333,468,465		437,910,000	10,000,000	3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43,791,000	131,373,000
			20~24층	4	105,486,165	336,803,835		442,290,000	10,000,000	3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44,229,000	132,687,000
			25~29층	5	106,530,795	340,139,205		446,670,000	10,000,000	3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44,667,000	134,001,000
			30~34층	5	108,617,670	346,802,330		455,420,000	10,000,000	3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45,542,000	136,626,000
			35~39층	5	109,139,985	348,470,015		457,610,000	10,000,000	3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45,761,000	137,283,000
			40~44층	5	109,662,300	350,137,700		459,800,000	10,000,000	3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137,940,000
			45~49층	5	110,184,615	351,805,385		461,990,000	10,000,000	3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14A	104동(1호), 105동(1호), 106동(1호)	105	12~14층	9	159,064,920	509,122,800	50,912,280	719,100,000	10,000,000	6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215,730,000	
			15~19층	15	159,865,664	511,685,760	51,168,576	722,720,000	10,000,000	62,272,000	72,272,000	72,272,000	72,272,000	72,272,000	72,272,000	72,272,000	72,272,000	216,816,000	
			20~24층	12	161,462,728	516,797,520	51,679,752	729,940,000	10,000,000	62,994,000	72,994,000	72,994,000	72,994,000	72,994,000	72,994,000	72,994,000	72,994,000	218,982,000	
			25~29층	15	163,062,004	521,916,360	52,191,636	737,170,000	10,000,000	63,717,000	73,717,000	73,717,000	73,717,000	73,717,000	73,717,000	73,717,000	73,717,000	221,151,000	
			30~34층	15	166,258,344	532,146,960	53,214,696	751,620,000	10,000,000	65,162,000	75,162,000	75,162,000	75,162,000	75,162,000	75,162,000	75,162,000	75,162,000	225,486,000	
			35~39층	15	167,059,088	534,709,920	53,470,992	755,240,000	10,000,000	65,524,000	75,524,000	75,524,000	75,524,000	75,524,000	75,524,000	75,524,000	75,524,000	226,572,000	
			40~44층	15	167,857,620	537,265,800	53,726,580	758,850,000	10,000,000	6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75,885,000	227,655,000
			45~49층	9	168,658,364	539,828,760	53,982,876	762,470,000	10,000,000	6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76,247,000	228,741,000
114B	103동(1호)	44	2층	1	150,548,720	481,864,800	48,186,480	680,600,000	10,000,000	5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204,180,000	
			3~4층	2	152,092,696	486,806,640	48,680,664	687,580,000	10,000,000	58,758,000	68,758,000	68,758,000	68,758,000	68,758,000	68,758,000	68,758,000	68,758,000	206,274,000	
			5~9층	5	152,864,684	489,277,560	48,927,756	691,070,000	10,000,000	59,107,000	69,107,000	69,107,000	69,107,000	69,107,000	69,107,000	69,107,000	69,107,000	207,321,000	
			10~11층	2	153,636,672	491,748,480	49,174,848	694,560,000	10,000,000	59,456,000	69,456,000	69,456,000	69,456,000	69,456,000	69,456,000	69,456,000	69,456,000	208,368,000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 가액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10-10	2024-06-10	2025-02-10	2025-10-10	2026-06-10	2027-02-10	
									입주지정일									
106동(4호)			12~14층	3	161,723,744	517,632,960	51,763,296	731,120,000	10,000,000	63,112,000	73,112,000	73,112,000	73,112,000	73,112,000	73,112,000	73,112,000	73,112,000	219,336,000
			15~19층	5	162,535,548	520,231,320	52,023,132	734,790,000	10,000,000	63,479,000	73,479,000	73,479,000	73,479,000	73,479,000	73,479,000	73,479,000	73,479,000	220,437,000
			20~24층	4	164,159,156	525,428,040	52,542,804	742,130,000	10,000,000	64,213,000	74,213,000	74,213,000	74,213,000	74,213,000	74,213,000	74,213,000	74,213,000	222,639,000
			25~29층	5	165,787,188	530,638,920	53,063,892	749,490,000	10,000,000	64,949,000	74,949,000	74,949,000	74,949,000	74,949,000	74,949,000	74,949,000	74,949,000	224,847,000
			30~34층	5	169,036,616	541,039,440	54,103,944	764,180,000	10,000,000	66,418,000	76,418,000	76,418,000	76,418,000	76,418,000	76,418,000	76,418,000	76,418,000	229,254,000
			35~39층	5	169,848,420	543,637,800	54,363,780	767,850,000	10,000,000	66,785,000	76,785,000	76,785,000	76,785,000	76,785,000	76,785,000	76,785,000	76,785,000	230,355,000
			40~44층	5	170,662,436	546,243,240	54,624,324	771,530,000	10,000,000	67,153,000	77,153,000	77,153,000	77,153,000	77,153,000	77,153,000	77,153,000	77,153,000	231,459,000
			45~46층	2	171,474,240	548,841,600	54,884,160	775,200,000	10,000,000	6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232,560,000
		34	12~14층	3	164,185,700	525,513,000	52,551,300	742,250,000	10,000,000	64,225,000	74,225,000	74,225,000	74,225,000	74,225,000	74,225,000	74,225,000	74,225,000	222,675,000
			15~19층	5	165,010,776	528,153,840	52,815,384	745,980,000	10,000,000	64,598,000	74,598,000	74,598,000	74,598,000	74,598,000	74,598,000	74,598,000	74,598,000	223,794,000
			20~24층	4	166,660,928	533,435,520	53,343,552	753,440,000	10,000,000	65,344,000	75,344,000	75,344,000	75,344,000	75,344,000	75,344,000	75,344,000	75,344,000	226,032,000
			25~29층	5	168,313,292	538,724,280	53,872,428	760,910,000	10,000,000	66,091,000	76,091,000	76,091,000	76,091,000	76,091,000	76,091,000	76,091,000	76,091,000	228,273,000
			30~34층	5	171,611,384	549,280,560	54,928,056	775,820,000	10,000,000	67,582,000	77,582,000	77,582,000	77,582,000	77,582,000	77,582,000	77,582,000	77,582,000	232,746,000
			35~39층	5	172,436,460	551,921,400	55,192,140	779,550,000	10,000,000	67,955,000	77,955,000	77,955,000	77,955,000	77,955,000	77,955,000	77,955,000	77,955,000	233,865,000
			40~44층	5	173,263,748	554,569,320	55,456,932	783,290,000	10,000,000	68,329,000	78,329,000	78,329,000	78,329,000	78,329,000	78,329,000	78,329,000	234,987,000	
			45~46층	2	174,086,612	557,203,080	55,720,308	787,010,000	10,000,000	68,701,000	78,701,000	78,701,000	78,701,000	78,701,000	78,701,000	78,701,000	236,103,000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관련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천하여 추천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 조치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한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추가선택품목 및 유상옵션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금의 납부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일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관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입주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면적관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별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14A	11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	-	2	2	3	1	1	-	1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2	2	3	1	1	-	-	-	-	10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	1	-	-	1	1	3	1	1	-	1	-	-	9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1	3	3	5	2	2	1	1	-	-	22	
	장애인	충청남도	1	1	1	-	-	3	3	4	2	1	-	-	-	-	16
		대전광역시	-	-	-	-	-	2	2	1	1	-	-	-	-	-	6
		세종특별자치시	-	-	-	-	-	1	1	2	-	1	-	1	-	-	6
계	3	3	3	1	1	14	14	21	8	7	1	4	-	-	8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14	14	21	8	7	1	4	10	8	87	
신혼부부 특별공급		7	7	7	2	2	27	27	41	16	13	2	9	-	-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6	6	6	2	2	14	14	21	8	7	1	4	-	-	9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	1	1	-	-	4	4	6	2	2	-	1	3	2	27	
합계		17	17	17	5	5	73	73	110	42	36	5	22	13	10	44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b>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출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충청남도(천안시 포함)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연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초과~160%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기타지역
천안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에 의거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2.06(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견본주택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2.12.07(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2.12.08(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정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 12. 14.(수)</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2. 19.(월) ~ 2022. 12. 24.(토) (10:00~16: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li> <li>- 당사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co.kr/s/#skyum</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skyu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2.14 (수) ~ 2022.12.23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2.14 (수)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한 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수행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청이 취소된 자는 당청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청자로 봅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청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VI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청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b>제출기간</b>	• 2022.12.19.(월) ~ 2022.12.24.(토) (6일간, 10:00 ~ 16:00)
<b>대상</b>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청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별도 일정 통보)
<b>제출처</b>	• 당사 견본주택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청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li> <li>•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li> <li>•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ul>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청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에 당청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청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자격,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청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청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가능 일정 및 시간대, 예약 방법 등 세류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당청자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청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청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청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청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청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청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업 주체는 접수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이 이전에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청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청 자격을 정해진 기간내(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청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표1]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예비입주자 포함)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li> <li>• 하단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참고</li> <li>•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포함</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li> <li>•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	가정정수 산정기준표	-	• 건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하단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참고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하단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참고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일반공급 (가정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직계비속</li> <li>-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li>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li> </ul>
		○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li> </ul>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li>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서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견본주택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셔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Ⅶ 계약체결 일정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12.26.(월)~2022.12.28.(수), 3일간, 10:00~17:00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견본주택 (주소 : 천안시 두정동 1435번지)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 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⑤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⑥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배우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⑦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당첨자 본인만 계약 가능합니다. (대리인 계약 불가)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가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분양계약체결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과소)납부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1억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시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1차 계약금)	KB국민은행	81279-07300-0017	(주)무궁화신탁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B국민은행 / 계좌번호 648001-04-213364 / 예금주: (주)무궁화신탁]로 관리됩니다.
- ※ 1차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환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단지로 입주지정 기간은 60일 이내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선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클럽하우스,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H아이숲,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스카이 라운지(49F)],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지하1층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7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이며, 위치 및 동선은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2~5층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이며, 위치 및 동선은 위치 및 동선은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10.10	입주지정일	
59A	11,880,000	1,188,000	1,188,000	9,504,000	
59B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59C	6,710,000	671,000	671,000	5,368,000	
59D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59E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84A	15,840,000	1,584,000	1,584,000	12,672,000	
84B	11,880,000	1,188,000	1,188,000	9,504,000	
84C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84D	17,160,000	1,716,000	1,716,000	13,728,000	
84E	12,980,000	1,298,000	1,298,000	10,384,000	
84F	9,790,000	979,000	979,000	7,832,000	
84G	15,070,000	1,507,000	1,507,000	12,056,000	
114A	20,130,000	2,013,000	2,013,000	16,104,000	
114B	21,450,000	2,145,000	2,145,000	17,160,000	

(2)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계약금)	국민은행	(추후 통보 예정)	무궁화신탁(주)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공사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국민은행 / 계좌번호 648001-04-225134/ 예금주 : 무궁화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발코니확장공사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환기구(디퓨저) 위치, 시스템에어컨 및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발코니), 실외기실(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 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음선)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지급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은 가구, 전자제품 계약과 무관하며, 추후 건본주택에 전시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설치장소	실내기 개소	일반형	고급형 (공기청정기 기능포함)
전실	59TYPE	거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4	6,490,000	7,690,000
	84TYPE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	8,690,000	10,190,000
	114TYPE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	9,020,000	10,520,000
거실+안방+주방	59TYPE	거실/주방, 안방	2	3,410,000	4,280,000
	84TYPE	거실, 주방, 안방	3	5,170,000	6,070,000
	114TYPE	거실, 주방, 안방	3	5,720,000	6,620,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기본확장형 기준이며, 향후 평면선택 옵션 선택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 2개소(거실 : 스탠드형, 안방 :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 에어컨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로 일괄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2)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제조사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3구 인덕션	SK매직	IHR-B3200		전 평형	480,000	48,000	48,000	384,000	
기능성 오븐	삼성전자	NQ36A6555CK		전 평형	320,000	32,000	32,000	256,000	
빌트인 패키지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삼성전자 / LG전자 선택제)	LG전자	냉장	BC1L1AA1 (메탈그레이)	59TYPE (김치냉장고 제외)	2,790,000	279,000	279,000	2,232,000	59타입 김치냉장고 제외
		냉동	BC1F1AA (메탈그레이)						
		냉장	BC1L1AA1 (메탈그레이)	84TYPE, 114TYPE					
		냉동	BC1F1AA (메탈그레이)						
	김치	BC1K1AA1 (메탈그레이)							
	삼성전자	냉장	RR40A7995AP(우) RR40A7895AP(좌) (코타화이트)	59TYPE (김치냉장고 제외)	3,120,000	312,000	312,000	2,496,000	
냉		RZ34A7965AP(우)							

품 목	제조사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애	RZ34A7865AP(좌) (코타화이트)						
		상	RR40A7995AP(우) RR40A7895AP(좌) (코타화이트)	84TYPE, 114TYPE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키큰장 포함
		애	RZ34A7965AP(우) RZ34A7865AP(좌) (코타화이트)						
		김	RQ34A7945AP(우) RQ34A7845AP(좌) (코타화이트)						
		지							
빌트인 식기세척기	SK매직	DWA-7505B		전 평형	680,000	68,000	68,000	544,000	
빌트인 커피머신	밀레 (제조사) / 밀레코리아(납품 사)	CVA 7440		84A, 84E, 84F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A (주방특화 소셜다이닝 특화 선택시 가능)
				114A, 114B	4,170,000	417,000	417,000	3,336,000	
의류관리기(드레스룸) (삼성전자 / LG전자 선택제)	LG전자	S3BOF 미스트베이지/우흰지 (오브제)		전 평형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삼성전자	DF60A8500TG 코타화이트/좌흰지 (비스포크)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3)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마감재,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59A	2,310,000	231,000	231,000	1,848,000	
		59B	2,310,000	231,000	231,000	1,848,000	
		59C	2,630,000	263,000	263,000	2,104,000	
		59D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59E	2,590,000	259,000	259,000	2,072,000	
		84A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84B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84C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D	2,130,000	213,000	213,000	1,704,000	

품 목	적 용 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84E	4,730,000	473,000	473,000	3,784,000	
		84F	3,010,000	301,000	301,000	2,408,000	
		84G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114A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114B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조명 특화 (안방조명, 거실우물천장리니어조명)	거실 + 안방	59A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59B	3,870,000	387,000	387,000	3,096,000	
		59C	4,350,000	435,000	435,000	3,480,000	
		59D	3,870,000	387,000	387,000	3,096,000	
		59E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84A	4,970,000	497,000	497,000	3,976,000	
		84B	5,370,000	537,000	537,000	4,296,000	
		84C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D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E	5,370,000	537,000	537,000	4,296,000	
		84F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G	4,260,000	426,000	426,000	3,408,000	
		114A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114B	5,260,000	526,000	526,000	4,208,000	
바닥 포세리타일	거실+주방+복도	59A	420,000	42,000	42,000	336,000	
		59B	400,000	40,000	40,000	320,000	
		59C	370,000	37,000	37,000	296,000	
		59D	410,000	41,000	41,000	328,000	
		59E	450,000	45,000	45,000	360,000	
		84A	690,000	69,000	69,000	55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시
			650,000	65,000	65,000	520,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시
		84B	700,000	70,000	70,000	560,000	
		84C	640,000	64,000	64,000	512,000	
		84D	700,000	70,000	70,000	560,000	
		84E	600,000	60,000	60,000	480,000	
		84F	700,000	70,000	70,000	560,000	

품 목	적 용 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유럽산 원목마루	거실+주방+복도+침실 (전실)	84G	650,000	65,000	65,000	520,000	
		114A	880,000	88,000	88,000	704,000	기본형 선택시
			840,000	84,000	84,000	672,000	주방특화 (바탕+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850,000	85,000	85,000	680,000	기본형 선택시
			840,000	84,000	84,000	672,000	주방 특화형 : 바탕(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59A	15,240,000	1,524,000	1,524,000	12,192,000	
		59B	14,800,000	1,480,000	1,480,000	11,840,000	
		59C	14,690,000	1,469,000	1,469,000	11,752,000	
		59D	14,900,000	1,490,000	1,490,000	11,920,000	
		59E	15,550,000	1,555,000	1,555,000	12,440,000	
		84A	22,380,000	2,238,000	2,238,000	17,904,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시
			21,820,000	2,182,000	2,182,000	17,456,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시
		84B	22,150,000	2,215,000	2,215,000	17,720,000	
		84C	21,090,000	2,109,000	2,109,000	16,872,000	
		84D	22,800,000	2,280,000	2,280,000	18,240,000	기본형 선택시
			22,540,000	2,254,000	2,254,000	18,032,000	주방특화(소형가전장 선택시)
84E	21,700,000	2,170,000	2,170,000	17,360,000			
84F	22,620,000	2,262,000	2,262,000	18,096,000			
84G	21,960,000	2,196,000	2,196,000	17,568,000			
114A	29,780,000	2,978,000	2,978,000	23,824,000	기본형 선택시		
	29,260,000	2,926,000	2,926,000	23,408,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29,490,000	2,949,000	2,949,000	23,59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29,230,000	2,923,000	2,923,000	23,384,000	주방 특화형 : 바탕 (50T 인조대리석) + 소형가전장 선택시		

품 목	적 용 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114B	29,250,000	2,925,000	2,925,000	23,400,000	기본형 선택시
			28,630,000	2,863,000	2,863,000	22,90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28,930,000	2,893,000	2,893,000	23,14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28,990,000	2,899,000	2,899,000	23,192,000	주방 특화형 : 바탑(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바닥 포세린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거실, 주방, 복도 (포세린타일) / 침실(원목마루)	59A	8,310,000	831,000	831,000	6,648,000	
		59B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59C	8,710,000	871,000	871,000	6,968,000	
		59D	8,130,000	813,000	813,000	6,504,000	
		59E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84A	11,070,000	1,107,000	1,107,000	8,856,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시
			11,040,000	1,104,000	1,104,000	8,83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시
		84B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84C	10,640,000	1,064,000	1,064,000	8,512,000	
		84D	11,230,000	1,123,000	1,123,000	8,984,000	
			10,980,000	1,098,000	1,098,000	8,784,000	주방특화 (소형가전장 선택시)
		84E	11,860,000	1,186,000	1,186,000	9,488,000	
		84F	11,090,000	1,109,000	1,109,000	8,872,000	
		84G	11,340,000	1,134,000	1,134,000	9,072,000	
		114A	15,350,000	1,535,000	1,535,000	12,280,000	기본형 선택시
			14,830,000	1,483,000	1,483,000	11,86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15,060,000	1,506,000		1,506,000	12,048,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품 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15,320,000	1,532,000	1,532,000	12,256,000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주방 특화형 : 바탑(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15,260,000	1,526,000	1,526,000	12,208,000	기본형 선택시
		114B	14,640,000	1,464,000	1,464,000	11,71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14,940,000	1,494,000	1,494,000	11,95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15,240,000	1,524,000	1,524,000	12,192,000	주방 특화형 : 바탑(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입식빨래볼	다용도실	84A	510,000	51,000	51,000	408,000	
		84F	510,000	51,000	51,000	408,000	
		84G	510,000	51,000	51,000	408,000	
		114A	510,000	51,000	51,000	408,000	
		114B	510,000	51,000	51,000	408,000	
입식파우더형 반침장	침실2	59 TYPE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 TYPE	1,470,000	147,000	147,000	1,176,000	84B - 침실1 적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안방 드레스룸	84A	240,000	24,000	24,000	192,000	
		84B	240,000	24,000	24,000	192,000	
		84C	230,000	23,000	23,000	184,000	
		84D	240,000	24,000	24,000	192,000	
		84G	220,000	22,000	22,000	176,000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침실1 드레스룸	114A	280,000	28,000	28,000	224,000	
		114B	250,000	25,000	25,000	200,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안방	114A	2,740,000	274,000	274,000	2,192,000	
		114B	3,170,000	317,000	317,000	2,536,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안방	114A	2,190,000	219,000	219,000	1,752,000	
		114B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조명특화	주방	59A	520,000	52,000	52,000	416,000	
		59B	520,000	52,000	52,000	416,000	
		59C	360,000	36,000	36,000	288,000	

품 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59D	460,000	46,000	46,000	368,000	
		59E	430,000	43,000	43,000	344,000	
		84A	590,000	59,000	59,000	472,000	기본형 선택시
			670,000	67,000	67,000	536,000	주방특화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
		84B	610,000	61,000	61,000	488,000	
		84C	640,000	64,000	64,000	512,000	
		84D	650,000	65,000	65,000	520,000	
		84E	560,000	56,000	56,000	448,000	
		84F	470,000	47,000	47,000	376,000	
		84G	650,000	65,000	65,000	520,000	
		114A	650,000	65,000	65,000	520,000	기본형 선택시
			830,000	83,000	83,000	664,000	주방특화 (바탕+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750,000	75,000	75,000	600,000	기본형 선택시
			850,000	85,000	85,000	680,000	주방특화 (바탕 선택시)
아일랜드 특화 (인조대리석 상판 마감)	주방	59A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아일랜드장 조명 : 1면 적용
		59B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59D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59E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아일랜드 특화 (세라믹타일 상판 마감)	주방	59A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아일랜드장 조명 : 1면 적용
		59B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59D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59E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	주방	59A	3,120,000	312,000	312,000	2,496,000	기본형 선택시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B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기본형 선택시
			3,360,000	336,000	336,000	2,688,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C	2,010,000	201,000	201,000	1,608,000	
		59D	2,820,000	282,000	282,000	2,256,000	기본형 선택시
			3,330,000	333,000	333,000	2,664,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E	2,610,000	261,000	261,000	2,088,000	기본형 선택시		

품 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84A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기본형 선택시
			3,920,000	392,000	392,000	3,136,000	주방특화(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
		84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4C	3,950,000	395,000	395,000	3,160,000	
		84D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84E	3,480,000	348,000	348,000	2,784,000	
		84F	2,390,000	239,000	239,000	1,912,000	
		84G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14A	3,940,000	394,000	394,000	3,152,000	기본형 선택시
			4,130,000	413,000	413,000	3,304,000	주방특화(바탕+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주방	84A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소셜 다이닝 특화형 : 그랜드 아일랜드	주방	84A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에만 선택가능
소형가전장	주방	84D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주방 특화형 : 바탕 (50T 인조대리석) + 소형가전장	주방	114A	5,790,000	579,000	579,000	4,632,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주방 특화형 : 바탕(50T 인조대리석)	주방	114B	1,260,000	126,000	126,000	1,008,000	
욕실 1 고급 특화 옵션 (욕조형)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바닥 중국산)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수전류)	욕실1	59 TYPE	3,070,000	307,000	307,000	2,456,000	
		84 TYPE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114 TYPE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욕실 1 고급 특화옵션(샤워부스형)	욕실1	59 TYPE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품 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10.10	입주지정일	
(포세린타일(벽체 유립산+바닥 중국산) 블랙매트 프레임 샤워부스+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수전류)		84 TYPE	3,240,000	324,000	324,000	2,592,000	
		114 TYPE	3,350,000	335,000	335,000	2,680,000	
욕실 2 특화옵션 (포세린타일(벽체 유립산+바닥 중국산) 블랙매트 프레임 샤워부스+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수전류)	욕실2	59~84 TYPE	3,160,000	316,000	316,000	2,528,000	
		114 TYPE	3,880,000	388,000	388,000	3,104,000	
슬라이딩 도어	욕실1	114 TYPE	610,000	61,000	61,000	488,000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_수동형)	현관	전 평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_자동형)	현관	59~84 TYPE (84B, 84G 제외)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보이스룸	거실+주방+안방	전 평형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H-BELL	거실	전 평형	190,000	19,000	19,000	152,000	
천장형 에어샤워	현관	전 평형	620,000	62,000	62,000	496,000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드레스룸	전 평형	780,000	78,000	78,000	624,000	
광플라즈마 천장형 공기청정기	거실	전 평형	2,160,000	216,000	216,000	1,728,000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현관	전 평형	330,000	33,000	33,000	264,000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거실+주방	전 평형	640,000	64,000	64,000	512,000	

-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114A의 경우 냉장고 옵션에 따라 상판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D, 114A의 경우 소형가전장은 세라믹 벽, 상판으로만 적용됩니다.
- ※ 현관 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의 내부 구성 및 길이, 마감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84A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에만 그랜드아일랜드 선택 가능합니다.
- ※ 84A 확장형 주방 선택시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 불가합니다.

(4) 무상선택품목

품 목	적용실	주택형
파우더장 선택제 (좌식/입식)	안방 드레스룸	84A,84B,84C,84D,84F,84G,114A,114B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의류관리기 공간)	안방 드레스룸	전 평형
파우더장 선택제 (좌식/입식)	침실1 드레스룸	114A, 114B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의류관리기 공간)	침실1 드레스룸	114A, 114B
욕실1 선택제 (욕조형/샤워부스형)	욕실1	전 평형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3.10.10	입주 지정일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금)	하나은행	(추후 통보 예정)	현대건설(주)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추가 선택품목옵션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910031-59104 /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유상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최종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유상선택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유상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선택품목 선택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및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올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벽체도장,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경락벽체, 월패드,일괄소등스위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조명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 (주방매입/복도등 제외)	배관/배선(스위치 및 콘센트), 주방매입/복도등
욕실	욕실천정, 타일(바닥/벽),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방수(바닥, 벽체), 바닥미장, 전기 배관/배선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빌트인가전기류, 주방스마트거치대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류	-
창호	발코니 외부 PL창호, 목재문 및 ABS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용 철재도어, 철재 난간대
옵션품목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미설치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14A	114B
마이너스 옵션 금액	11,860,000	11,890,000	12,120,000	11,810,000	11,780,000	14,790,000	14,930,000	14,960,000	14,870,000	14,880,000	14,950,000	15,020,000	17,710,000	17,730,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유상 선택 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 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영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전기구류의 설치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점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체결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이 시행되지 못할 수 있는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IX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과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명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면디자인(저층부석재 및 도장디자인 등), 줄눈,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BI 위치와 크기 및 개소, 필로티, 외부계단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년 09월 승인(예정)된 사업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도심경관의 역사·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li> </ul>
----	------	--

	<p>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법」 제26조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 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li> <li>•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 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단지명 등은 현장 상황,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약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li> </ul>



		<p>바랍니다.</p> <p>①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장식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p> <p>②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p> <p>③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p> <p>④ 계획도로 및 방음벽의 형태, 위치, 도로연결, 디자인 등</p>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li> <li>본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판매시설 배치구조 및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천창,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천안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사업지역은 와촌초등학교 통학구역이나 사업완성 시기에 맞춰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사업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li> </ul>
단지	단지설계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휨스 등은 미설치 예정이며,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마감 및 단지레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녹지,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li> <li>②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지하주차장 진·출입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li> <li>③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재활용포함),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li> <li>④ 근린생활시설 상부 인접세대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li> <li>⑤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 및 산책로·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li> <li>⑥ 단지 배치계획 상 동간 거리가 좁아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li> <li>⑦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환경권 침해</li> <li>⑧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li> </ul>

		<p>⑨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천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절토부/성토부), 산벽 및 조정석 쌓기 등으로 계획되어 지며, 설치위치 및 범위, 재료,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한 공동주택 출입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출입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외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 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101동, 103동, 104동, 106동 등의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차량 소음 및 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필로티가 적용된 각 동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및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데크 등 옹벽 노출 부위는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일부 설재 마감으로 시공됩니다.</li> <li>•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16g입니다.</li> <li>• 당 사업지는 경부선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접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ul>
	<p>동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①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li> <li>②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헬륨/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주방배기,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집광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li> <li>③ E/V 운행에 따른 인접 침실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li> <li>•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의 설치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li> <li>※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21층 : 101동 PIT, 102동 PIT, 103동 PIT, 104동 PIT, 105동 PIT, 106동 PIT</li> <li>- 지하1층 : 102동 헬륨, 105동 헬륨</li> <li>- 지하3층 : 102동 헬륨, 105동 헬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 1층 동출입구의 전면계단 및 경사로는 변경될 예정입니다.(동출입구, 바닥높이 등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건물 옥상에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서는 빛의 간섭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옥탑(지붕층), 지하주차장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집광판,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환,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 세대창고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정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 및 단지 레벨차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문주와 인접하여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 및 빛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문주의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문주가 설치되지 않은 주출입구는 문주가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또는 도장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입면에 세대 환기설비에 따른 급/배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정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공용시설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옥상조경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부대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추가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영, 단지홍보사인물, 오수/배수펌프,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보안/방범 시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영유아보육법개정('18.12.24)에 따라 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반대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운영을 위해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 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장비 등이 노출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단지 레벨차에 의해 각 동, 코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층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출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확장/일반/장애이용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1층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으니 주차대수 등의 분포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가상의 분할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101, 103, 104, 105, 106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위치 및 입면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전면 조경계획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창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li> <li>•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상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li> </ul>

		<p>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li> <li>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폭, 깊이) 감소, 천장 마감 및 높이,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확장시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비확장되는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 제외), 비확장시에는 발코니창 없이 내부 분합문(창)만 설치되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li> <li>침실1(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벽체로 구획이 되어 있으며, 해당 벽체의 재질, 형태, 크기, 높이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최하층 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에서 하부층으로 사다리가 연결되며 동별 위치에 따라 로비 등 주출입구의 전면 외부공간 등을 통해 탈출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상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상부 세대의 경우 추후 인허가 협의를 통해 하향식피난구가 삭제되거나 완강기 등 피난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실 수평계획모듈은 주택의 설계도서기준 작성기준에 의거 계획되었고,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해당 공차 안에서 실 수평계획모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세대 창호 프레임 색상은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및 난간의 사양(제조사와 모델, 형태 및 사양, 프레임 및 창짝 규격, 색상/디자인, 유리/하드웨어 사양, 분할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 시 각종 도어의 사양(틀 디자인, 손잡이, 크기, 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타입별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확장형의 경우 유리난간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됩니다.(주방 제외)</li> <li>단지 내 지상도어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어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소방관진입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유리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소방관진입창은 101동~103동 20층이하 세대, 104동~106동 19층이하 세대에 설치되오니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타일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li> <li>•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li> <li>•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사시 성능에 따라 현관문 프레임 및 하부쉴 단면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하부쉴 단면형상, 재질, 색상, 마감재, 디테일, 설치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식빨래볼(유상옵션)은 평형에 따라 하부장 내부 구성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가구 내부에 적용된 하드웨어 및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사양, 디테일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타일 및 세라믹타일의 나누기, 패턴, 두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평형 별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평형 별 평면선택제(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확장형 주방가구 대비 가구마감의 색상,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라믹타일의 이음부위 및 패턴, 색상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아트월 포세린타일 및 세라믹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세라믹타일 패턴 연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중문은 수동형/ 자동형 유상옵션 선택형에 따라 마감 디테일, 가구 길이, 가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중문 자동형은 일부타입에서는 선택이 불가합니다.(84B, 84G, 114A, 114B)</li> <li>• 유상옵션(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선택 시 시스템 선반 길이, 마감 디테일이 변경됩니다.</li> <li>• 유상옵션(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확장형 주방 대비 마감 디테일, 가구 구성, 마감 색상, 상하부장 및 주방 상판의 길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샤워부스 선택형에 따라 비누턱과 욕실장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114타입 욕실1 유상옵션(슬라이딩 도어) 미선택시, 도어 오프닝 구간 프레임만 설치됩니다.(도어 미설치)</li> <li>• 59 전타입과 84E타입 안방 파우더장의 형태는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가구 파우더장으로 설치되오니 모형 및 분양안내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li> <li>• 59A, 59B 다용도실의 경우, 세탁기 공간 바닥 단턱 측면이 노출되오니 모형 및 분양안내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li> <li>• 59C 주방의 경우 별도의 식탁공간이 없고 아일랜드형 바탑에서 다이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모형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li> <li>• 59A, 59B, 59D, 84C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빨래 확장봉 연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84C 거실 아트월 좌측에 실외기실문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84G 현관팬트리 대신, 신발장 2개소가 설치됩니다.</li> <li>• 114A, 114B 현관 중문 선택에 따라 디딤판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14A 유상옵션(주방특화형) 선택 시, 주방 바탑의 상판 마감은 인조대리석이고 소형가전장 상판 및 벽체 마감은 세라믹 타일이 설치됩니다.</li> <li>• 하부장이 있는 세면대의 경우 하부장 내부에 배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비데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li> <li>•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전열교환장비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중문 개방 후 사용시, 세대 안으로 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배수구, 수전류 및 액세서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으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건립 세대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각 세대별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월패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주방 가구 악세서리 및 가스배관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티(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 및 보이스홈(유상옵션으로 홈투카 서비스 내용 포함)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냉방기능은 시스템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됨)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유상옵션)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옆면이나 뒷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다.
- 옥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한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에 미세먼지 클리너가 설치되며 수납공간이 제한됩니다.</li> <li>•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중문 개방 후 사용시, 세대 안으로 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li> <li>• 실외기 그릴의 제품, 재질, 색상, 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법 54조에 의거 마감자재 품목 리스트는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세대 단자함, 세대 분전함은 상황에 따라 제품사양 및 디자인,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는 84A, 114A 타입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11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헤드, 환기구, 스피커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장환기구(디퓨저),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정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 경량콘크리트 패널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li> <li>• 건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의 경우 빌트인 가전 옵션 여부에 따라 상판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가전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E, 84F, 114A, 114B의 경우 빌트인 가전 옵션 여부에 따라 키크장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D, 114A의 경우 소형가전장은 세라믹타일 벽 및 상판으로 적용됩니다.</li> <li>•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114A의 경우 주방 팬트리 내부의 선반이 기본형과 다른 구성으로 적용됩니다.</li> <li>• 바닥 마감선택제 유상옵션 포세린타일 선택시 복도팬트리, 주방 팬트리 바닥은 포세린타일이 적용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A, 114B의 경우 욕실 1의 세면대 바닥은 기본 포세린타일이 적용됩니다.(욕실 1 내부의 바닥타일과 다른 타일로 시공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 내부 구성 및 길이, 마감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의류관리기 공간(무상옵션)과 의류관리기(제품/유상옵션) 선택 시 시스템가구 폭 및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의류관리기는 별도 유상옵션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입식빨래볼(유상옵션) 길이 및 구성은 타입 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타일,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 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철제방화문(현관문, 실외기실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철,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li> <li>•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li> <li>•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 <li>• 단위세대 타입별 주방내부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li> <li>•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각종 디테일(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 레일, 유리 등) 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타일(욕실 바닥 및 벽체, 현관 바닥, 아트월 등) 및 세라믹타일(거실 아트월 벽체, 주방 상판/벽체(유상옵션)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및 벽체(유상옵션)은 이음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벌어질 수 있습니다.</li> <li>•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형에 따라 마감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하자 접수를 할 수 없으니 명확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신발장가구 구성 및 주변 마감 디테일이 변경됩니다.</li> <li>• 각 타입별 슬라이딩도어 + 일반가구 반침장 유상옵션은 내부 구성이 상이하하며, 가구 내부의 구성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타입별 드레스룸 은경의 규격은 상이하하며, 본공사 시 은경의 사이즈 및 가구 마감 디테일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타입별 주방 세라믹타일 유상옵션은 상판 및 벽체의 이음부위의 이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84A 유상옵션(주방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아일랜드 하부장 색상 및 내부 구성이 달라집니다.</li> <li>• 84A 유상옵션(주방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아일랜드 하부장 깊이 및 폭이 달라집니다.</li> <li>• 84A, 84D, 114A,114B 타입 유상옵션(주방 특화형) 선택 시에만 아일랜드 혹은 바탑, 소형가전장에 콘센트가 설치됩니다.</li> <li>• 본공사시 주방 상부장 상단에 가스배관 또는 가스배관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li> </ul>
--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외기조건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인증받은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난방,급탕및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 장치 설치
	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2. 산 정 자 : ㈜부유최신석 3. 도 지 위 호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4. 층 높 등급</p> <p>가. 소의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d>1. 건물구조 적정성</td><td>★★★★</td></tr> <tr><td>2. 구조안전성 적정성</td><td>★★★★</td></tr> <tr><td>3. 화재 안전성 적정성</td><td>★★★★</td></tr> <tr><td>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d>1. 내진성</td><td>★★★★</td></tr> <tr><td>2. 수직구조 안전성</td><td>★★★★</td></tr> <tr><td>3. 수평구조 안전성</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d>1. 건물구조 적정성</td><td>★★★★</td></tr> <tr><td>2. 구조안전성 적정성</td><td>★★★★</td></tr> <tr><td>3. 화재 안전성 적정성</td><td>★★★★</td></tr> <tr><td>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td><td>★★★★</td></tr> <tr><td>5. 내진성</td><td>★★★★</td></tr> <tr><td>6. 수직구조 안전성</td><td>★★★★</td></tr> <tr><td>7. 수평구조 안전성</td><td>★★★★</td></tr> <tr><td>8. 친환경 건축성능</td><td>★★★★</td></tr> <tr><td>9. 에너지 효율성</td><td>★★★★</td></tr> <tr><td>10. 자원순환 적정성</td><td>★★★★</td></tr> <tr><td>11. 실내환경 쾌적성</td><td>★★★★</td></tr> <tr><td>12. 생활환경 적정성</td><td>★★★★</td></tr> <tr><td>13. 안전성</td><td>★★★★</td></tr> <tr><td>14. 편의성</td><td>★★★★</td></tr> <tr><td>15. 기타</td><td>★★★★</td></tr> </table> <p>2022년 10월 4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1. 건물구조 적정성	★★★★	2. 구조안전성 적정성	★★★★	3. 화재 안전성 적정성	★★★★	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	★★★★	1. 내진성	★★★★	2. 수직구조 안전성	★★★★	3. 수평구조 안전성	★★★★	1. 건물구조 적정성	★★★★	2. 구조안전성 적정성	★★★★	3. 화재 안전성 적정성	★★★★	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	★★★★	5. 내진성	★★★★	6. 수직구조 안전성	★★★★	7. 수평구조 안전성	★★★★	8. 친환경 건축성능	★★★★	9. 에너지 효율성	★★★★	10. 자원순환 적정성	★★★★	11. 실내환경 쾌적성	★★★★	12. 생활환경 적정성	★★★★	13. 안전성	★★★★	14. 편의성	★★★★	15. 기타	★★★★	<p><b>녹색건축 예비 인증서</b></p> <table border="1"> <tr><td>건축물 개요</td><td>건축명</td></tr> <tr><td>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td><td>건축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td></tr> <tr><td>건축주명 : ㈜부유최신석</td><td>건축주명 : ㈜부유최신석</td></tr> <tr><td>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td><td>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td></tr> <tr><td>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td><td>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td></tr> <tr><td>면적 : 202,525.64㎡</td><td>면적 : 202,525.64㎡</td></tr> <tr><td>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td><td>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td></tr> <tr><td>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td><td>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td></tr> </table> <p>의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호제항에 따라 녹색건축(예비) 등급 건축물로 인정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10월 4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건축물 개요	건축명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면적 : 202,525.64㎡	면적 : 202,525.64㎡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별첨 제 4호 제4차 개정 2021.7.20.)</p> <p>건축물 개요</p> <table border="1"> <tr><td>건축물명</td><td>건축물명</td></tr> <tr><td>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td><td>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td></tr> <tr><td>건축주명 : ㈜부유최신석</td><td>건축주명 : ㈜부유최신석</td></tr> <tr><td>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td><td>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td></tr> <tr><td>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td><td>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td></tr> <tr><td>면적 : 202,525.64㎡</td><td>면적 : 202,525.64㎡</td></tr> <tr><td>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td><td>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td></tr> <tr><td>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td><td>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td></tr> </table> <p>의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별첨 제 4호 제4차 개정 2021.7.20.)」 제11호제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10월 4일</p> <p>한국고효율건축연구원 이사장</p>	건축물명	건축물명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면적 : 202,525.64㎡	면적 : 202,525.64㎡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1. 건물구조 적정성	★★★★																																																																													
2. 구조안전성 적정성	★★★★																																																																													
3. 화재 안전성 적정성	★★★★																																																																													
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	★★★★																																																																													
1. 내진성	★★★★																																																																													
2. 수직구조 안전성	★★★★																																																																													
3. 수평구조 안전성	★★★★																																																																													
1. 건물구조 적정성	★★★★																																																																													
2. 구조안전성 적정성	★★★★																																																																													
3. 화재 안전성 적정성	★★★★																																																																													
4. 소음·진동 안전성 적정성	★★★★																																																																													
5. 내진성	★★★★																																																																													
6. 수직구조 안전성	★★★★																																																																													
7. 수평구조 안전성	★★★★																																																																													
8. 친환경 건축성능	★★★★																																																																													
9. 에너지 효율성	★★★★																																																																													
10. 자원순환 적정성	★★★★																																																																													
11. 실내환경 쾌적성	★★★★																																																																													
12. 생활환경 적정성	★★★★																																																																													
13. 안전성	★★★★																																																																													
14. 편의성	★★★★																																																																													
15. 기타	★★★★																																																																													
건축물 개요	건축명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면적 : 202,525.64㎡	면적 : 202,525.64㎡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건축물명	건축물명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물명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빌딩 주거복합 건축공사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주명 : ㈜부유최신석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건축시점 : 2022년 10월 4일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주소 : 송정남도 한양시 성정동 209-1 빌딩																																																																													
면적 : 202,525.64㎡	면적 : 202,525.64㎡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유형 정보 :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설 계 자 : 에이엔에이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 내진설계 등급

지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9	S4	1.2	D	1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평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16g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성종합기술단	㈜성우엔지니어링	㈜성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6,303,970,000	₩858,463,636	₩795,500,000	₩236,5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 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주)무궁화신탁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101호, 102호, 1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3,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사업자등록번호	429-87-01481	594-81-00464	120-86-58362	101-81-16293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내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분양계약 해제 및 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채무 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가 부담합니다.
-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및 시공사 현대건설(주)이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과 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매수인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주)무궁화신탁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주요내용(※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13400	일금 삼천오백사십오억육천이백이십사만삼천원정 ₩ 354,562,243,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p><b>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b></p> <p><b>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b></p>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p><b>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b></p>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감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사·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⑥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⑨ 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 ① 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을 (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를 (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를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 제8조 (대위 및 구상)

-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 제13조 (약관의 해석)

-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서개정 2019.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2019.7.25.>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co.kr/s/#skyum>

■ 건본주택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史傳예약제로. 건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2022. 12. 01. (목)
특별공급 접수		2022. 12. 06. (화)
일반공급 접수	1순위	2022. 12. 07. (수)
	2순위	2022. 12. 08. (목)
당첨자발표		2022. 12. 14. (수)
사전 서류접수		2022. 12. 19. (월) ~ 2022. 12. 24. (토), 6일간
계약체결		2022. 12. 26. (월) ~ 2022. 12. 28. (수), 3일간
<b>분양문의 1577-3565</b>		<b>총 999세대</b> (일반공급 554세대, 특별공급 445세대)